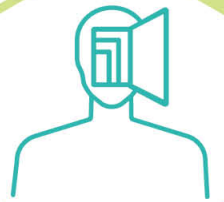


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방안 (관리감독자용)



대응기 상담프로그램 운영



● 긴급 대응기(재해 발생 후 7일 이전) : 침습 증상 및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 발생 단계

- 사고 발생 직후의 시기이므로 신체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
- 상실감, 분노, 비탄, 짜증, 해리 등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사고 경험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, 악몽에 시달리는 등의 침습 증상과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차츰 심해지는 단계이므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같은 초기 안정이 목표
- 심리전문가에 의한 사업장 집체교육이 필요
 -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초기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-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알림
- 극도의 심리적·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사고현장 출입을 자제시키고 휴식을 제공,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
- 심리상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(심한 불안, 불면)에 대한 약물치료를 연계
-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복귀 유도

● 초기 대응기(재해 발생 후 8일~1개월) :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고착될 수 있는 단계

- 목표는 수면장애, 주요 우울증, 불안장애, 알코올 사용 장애, 자살 등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
- 사건 충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※ 부분 위험군 및 고위험군에 대한 평가 및 상담이 필요
- 1차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 대상자를 선정
- 상담 진행 시,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하는 경우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고,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복귀 유도

필수 상담 대상자

- 직접 피해자
- 최초 발견자, 응급 구조 실시자
- 사고현장 직·간접 목격자
- 같은 팀·라인 근무자
- 재해자와 교대자
- 기숙사 룸메이트
- 재해자와 함께 장기 근무한 자
- 재해자와 사적 친분도가 높은 자
- 그 외 사내 사모임 회원, 노조 등 같은 조직에 있는 자
- 이외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● 중기 대응기(재해 발생 후 1~3개월) :

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우울증 등으로 진단될 수 있는 단계

- 목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완화 및 다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
- 추적관리와 2차 상담 실시에 협조
- 최대한 빠른 현장 복귀를 위해 사업장 측과 상담사가 조율(예, 부서이동 등)
-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하는 경우 전문치료를 연계하고,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

● 후기 대응기(재해 발생 후 3개월 이후) : 완전 호전 후 추적관찰이 진행되는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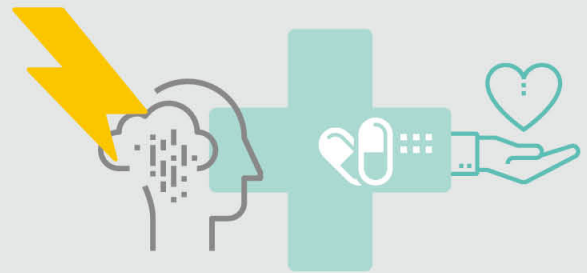
- 목표는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을 완화하는 것
- 호전 단계이지만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관리가 필요
- 대부분 평상시 활동으로 전환되며 최대한 일상 직장생활 복귀를 유도



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조치 및 운영체계

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조직 내에서의 예방조치 사항

- + 사업주, 관리자, 근로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활용하여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.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교육은 직무스트레스 관련 교육에 포함될 수 있음
- + 재해 발생 시 안전·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중에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요시 근로자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,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연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 기관의 연락처를 게시
- + 근로자와 상담사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- + 사고 후 사고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은 심리적 안정화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
상담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
- + 사고 후 약 1개월간의 심리적 변화가 근로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안내
- + 시간의 흐름과 심리 상담을 통해 충격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, 이때 회복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됨
- + 상담 종결 후 상담심리사는 '상담대상자의 사생활과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'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음을 인지할 것



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체계

